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0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설위원회(2015.10.19)

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현행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 제목 변경 (안 제4조)
- 강사의 위촉 해제 신설(안 제8조의2)
-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예술단체 운영지원 신설(안 별표 1)

- 문래예술창작촌 창작활동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문화·생활체육 행사명 및 단체명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본 개정 조례안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보조금 관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타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제2항 별표1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추가로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, 문래예술 창작촌 창작활동 사업, 예술단체(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)운영 사업을 신설하였는 바, 이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“법”의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,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, 아울러 기존에 예산지원<sup>1)</sup>을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예산 추계는 필요하지 않음.
- 다만,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대상, 범위, 방법 및 지원내역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, 이는 입법체계에 맞지 않고 입법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조례개정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 중요한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는 입법기술이 요구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# 1) 2015년도 예산지원 현황

| 사 업 명       | 지 원 금 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|
| 계           | 6,100만원 |
| 태권도 시범운영 사업 | 3,000만원 |
| 문화예술 창작촌 사업 | 2,800만원 |
| 예술단체 운영 사업  | 300만원   |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84 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5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현행화 및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 제목 변경 (안 제4조)
- 나. 강사의 위촉 해제 신설(안 제8조의2)
- 다. 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라. 예술단체 운영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마. 문래예술창작촌 창작활동지원 신설(안 별표 1)
- 바. 문화·생활체육 행사명 및 단체명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사항
  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 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동의)
 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동의)
- 라. 기타사항
  - (1) 입법예고(2015. 9. 3 ~ 9. 23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함은 위”를 “함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)”을 “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”을 “체육관련 단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학교체육”을 “체육꿈나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교부·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능은”을 “기능은 다음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강사의 위촉 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
2.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때

제9조제1항 중 “필요에 따라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| 행 사 명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-----|--|--|----|
| 체육행사       |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  | - 대상: 동민체육대회, 건강달리기대회,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<br>- 내용<br>·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 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<br>· 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| 정기 |
|            |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| - 대상: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<br>- 내용: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 | 정기 |
|            | 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  | 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<br>- 내용<br>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br>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 | 수시 |
|            | 체육관련 단체의 운영 지원   | - 대상: 구 체육회, 구 생활체육회 등<br>- 내용: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 | 연중 |
|            |  | - 대상: 구 태권도시범단<br>- 내용: 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 | 연중 |
|            | 체육꿈나무 육성·지원  | - 대상: 운동경기부 육성 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<br>- 내용: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, 훈련 등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  | 수시 |
| 체육교실 육성·지원 | - 대상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구민1인1스포츠 갖기 운동, 안양천건강체조교실 등<br>- 내용: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| 연중   |    |

| 구분           | 행 사 명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|--|----|
| 문화예술<br>행사개최 | 공연행사  | - 대상: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, 작은 문화마당(야외 공연 등), 구민노래자랑, 좋은영화무료 상영 등<br>-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, 자유공연(주민자율참여 공연), 생활체육 시범공연<br>- 경연대회의 경우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관객에게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| 정기 |
|              | 전시행사  | - 대상: 목련전, 영등포사진공모전<br>- 문학,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서예, 사진 등 예술인 작품 무료전시회<br>-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<br>- 공모전 경우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 지급  | 정기 |
|              | 문화산업단체<br>초청공연행사  | - 문화예술의 보호·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  | 수시 |
| 문화예술<br>예산지원 | 세시풍속  | - 전래 세시풍속 행사(퀴블놀이, 척사대회, 단오절행사 등)<br>-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 | 정기 |
|              | 공연행사  | -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및 각 예술단체, 관내 교육기관(초, 중, 고)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공연  | 수시 |
|              | 전시행사  | - 서예·사진·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 | 수시 |
|              | 전통문화행사  | - 부군당: 상산전(영등포동), 당산동부군당(당산2동), 방학곶지부군당(영등포본동), 도당(신길3동), 도림동당제(도림동)<br>-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  | 정기 |
|              | 문화행사참가  | - 대상: 영등포문화원,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회원, 그 밖에 구에서 선발된 인원<br>- 국내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   | 수시 |
| 문래예술<br>창작촌  | - 분야 : 공연, 연극, 창작예술, 전시회 등<br>- 공모전의 경우 심사에 의해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| 정기   |   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창작활동 지원              | 창작활동비 지원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예술단체<br>운영지원         | -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  | 정기 |
| 국내·외<br>자매결연<br>단체행사 | 문화행사<br>개최, 참가       | - 대상: 문화예술인, 일반인, 학생, 공무원 등<br>-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축제<br>행사교류   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<br>- 상호지역행사 참가 및 초청<br>- 차량 및 숙박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문화<br>체험단<br>상호교류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초·중·고등학교 어린이<br>- 상호 문화체험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<br>- 숙박비, 관람경비, 선물구매비, 차량지원 등 행사<br>소요경비 | 수시 |
|                      | 스포츠교류          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<br>- 상호 스포츠 교류<br>-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기타행사<br>지원           | 조찬기도회                | - 대상: 영등포구교구협의회원, 구·동 간부, 신우회원 등<br>- 관내교회 및 구청 개최시 행사 지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건전여가교실"이라 <u>함은</u> 위 제2호, 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과목(종목)을 교육, 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)</p> <p>① 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</u></p> <p>5. <u>학교체육 육성·지원</u>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5조(교실기능) 교실의 <u>기능</u>은 각 호와 같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<br/>-----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함은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) ①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체육관련 단체</u> -----<br/>-----</p> <p>5. <u>체육꿈나무</u> -----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교부·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5조(교실기능) -----<u>기능은</u> 다음 -----.</p> |

1. ~ 4. (생략)

〈신설〉

제9조(수강료) ① 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무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에게 장소 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강사의 위촉 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 
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

2.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  
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때

제9조(수강료) ① -----  
-----  
-----필요한 경우 -----  
-----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## 현 행

[별표 1]

### 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| 행 사 명           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체육 행사 | <u>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</u>     | - 대상: <u>한마음체육대회, 동민체육대회, 건강달리기대회 등</u><br>- 내용<br>·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<br>· <u>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</u>   | 정기 |
|       |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           | - 대상: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<u>연합회장기 대회 등</u><br>- 내용: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  | 정기 |
|       | 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               | 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<br>- 내용<br>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br>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 | 수시 |
|       | <u>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</u> | - 대상: <u>구 생활체육협의회</u><br>- 내용: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 | 연중 |

## 개 정 안

[별표 1]

### 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| 행 사 명           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체육 행사 | <u>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</u> | - 대상: <u>동민체육대회, 건강달리기대회, 서울시 민생활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</u><br>- 내용<br>·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<br>· <u>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</u>   | 정기 |
|       |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           | - 대상: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<u>연합회장기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</u><br>- 내용: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  | 정기 |
|       | 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               | 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<br>- 내용<br>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br>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 | 수시 |
|       | <u>체육관련 단체의 운영 지원</u>     | - 대상: <u>구 체육회, 구 생활체육회 등</u><br>- 내용: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 | 연중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학교 체육<br>육성·지원 | - 대상: <u>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육성 학교</u><br>- 내용: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<u>참가 및 우수 꿈나무육성학교에</u> 대한 예산 지원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교실<br>육성·지원  | - 대상: <u>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</u><br>- 내용: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<u>유료강좌 실시</u>  | 연중 |
| 문화<br>예술<br>행사<br>개최 | 공연 행사          | - 대상: <u>여의도한강축제, 작은 문화마당(선유도 등 야외공연),</u> 구민노래자랑, 좋은 영화무료상영 등<br>-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, 자유공연(주민 자율참여 공연), 생활체육 시범공연<br>- 경연대회의 경우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관객에게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| 정기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전시 행사          | - 대상: 목련전, 영등포사진공모전<br>- 문학,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서예, 사진 등 예술인작품 무료전시회<br>-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  | 정기 |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- 대상: <u>구 태권도시범단</u><br>- 내용: <u>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</u>   | <u>연중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꿈나무<br>육성·지원 | - 대상: <u>운동경기부 육성 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단체 등</u><br>- 내용: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 <u>참가, 훈련 등 꿈나무 육성에</u> 대한 예산 지원  | 수시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교실<br>육성·지원  | - 대상: <u>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구민1인1스포츠 갖기운동, 안양천건강체조교실 등</u><br>- 내용: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<u>유료강좌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</u>  | 연중        |
| 문화<br>예술<br>행사<br>개최 | 공연 행사          | - 대상: <u>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, 작은 문화 마당(야외공연 등),</u> 구민노래자랑, 좋은 영화무료상영 등<br>-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, 자유공연(주민 자율참여 공연), 생활체육 시범공연<br>- 경연대회의 경우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관객에게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| 정기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전시 행사          | - 대상: 목련전, 영등포사진공모전<br>- 문학,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서예, 사진 등 예술인작품 무료전시회<br>-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  | 정기        |

| 구분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공모전 경우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 지급  |    |
|             | 문화산업단체 초청공연행사 | - 문화예술의 보호·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 | 수시 |
| 문화 예술 예산 지원 | 세 시 풍 속       | - 전래 세시풍속 행사(쥐불놀이, 척사대회, 단오절행사 등)<br>-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  | 정기 |
|             | 공 연 행 사       | - <u>영등포예술인협의회</u> 및 각 예술단체, 관내 교육기관(초, 중, 고)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<u>문화예술공연</u>  | 수시 |
|             | 전 시 행 사       | - 서예·사진·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  | 수시 |
|             | 전통문화행사        | - 부군당: 상산전( <b>영등포동</b> ), 당산동부군당(당산2동), 방학곶지부군당( <b>영등포본동</b> ), 도당(신길3동), <b>도림동당제(도림동)</b><br>-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| 정기 |
|             | 문화행사참가        | - <u>국내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</u><br>- 대상: 영등포문화원, 영등포예술인협의회 회원, <u>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
| 구분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공모전 경우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 지급  |    |
|             | 문화산업단체 초청공연행사 | - 문화예술의 보호·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 | 수시 |
| 문화 예술 예산 지원 | 세 시 풍 속       | - 전래 세시풍속 행사(쥐불놀이, 척사대회, 단오절행사 등)<br>-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  | 정기 |
|             | 공 연 행 사       | - <u>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</u> 및 각 예술단체, 관내 교육기관(초, 중, 고)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<u>문화예술의 공연</u>   | 수시 |
|             | 전 시 행 사       | - 서예·사진·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  | 수시 |
|             | 전통문화행사        | - 부군당: 상산전( <b>영등포동</b> ), 당산동부군당(당산2동), 방학곶지부군당( <b>영등포본동</b> ), 도당(신길3동), <b>도림동당제(도림동)</b><br>-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| 정기 |
|             | 문화행사참가        | - 대상: <u>영등포문화원,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회원, 그 밖에 구에서 선발된 인원</u><br>- <u>국내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참가 및 초청 소요 경비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
| 구분   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|
| 국내·외 자매결연단체 행사 | 문화행사 개최, 참가     | - 대상: 문화예술인, 일반인, 학생, 공무원 등<br>-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지역축제 행사 교류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<br>- 상호지역행사 참가 및 초청<br>- 차량 및 숙박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어린이문화 체험단 상호 교류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초·중·고등학교 어린이<br>- 상호 문화체험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<br>- 숙박비, 관람경비, 선물구매비, 차량지원 등 행사 소요경비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스포츠교류     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<br>- 상호 스포츠 교류<br>-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기타 행사 지원       | 조찬기도회           | - 대상: 영등포구교구협의회회원, 구·동 간부, 신우회원 등<br>- 관내교회 및 구청 개최시 행사 지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
| 구분             | 행 사 명            | 대상 및 범위, 방법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               | <u>문래예술창작촌</u>   | - 분야 : 공연, 연극, 창작예술, 전시회 등<br>- 공모전의 경우 심사에 의해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창작활동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| 정기 |
|                | <u>예술단체 운영지원</u> | -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 | 정기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  |
| 국내·외 자매결연단체 행사 | 문화행사 개최, 참가      | - 대상: 문화예술인, 일반인, 학생, 공무원 등<br>-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지역축제 행사 교류 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<br>- 상호지역행사 참가 및 초청<br>- 차량 및 숙박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어린이문화 체험단 상호 교류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초·중·고등학교 어린이<br>- 상호 문화체험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<br>- 숙박비, 관람경비, 선물구매비, 차량지원 등 행사 소요경비 | 수시 |
|                | 스포츠교류            | 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<br>- 상호 스포츠 교류<br>-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
| 기타 행사 지원       | 조찬기도회            | - 대상: 영등포구교구협의회회원, 구·동 간부, 신우회원 등<br>- 관내교회 및 구청 개최시 행사 지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시 |